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되고, 「공직선거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(10명→8명)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 기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정원조정 576명 → 576명(변동없음)
- 집행기관 565명 → 564명(감1명)
- 의회사무과 11명 → 12명(증1명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565명"을 "564명"으로 하고 제2호 중 "11명"을 "12명"으로 한다

"「별표1」를 별지와 같이 한다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1〕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

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							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576	288	12	105	14	20	137
정무직 계	1	1	0	0	0	0	0
군 수	1	1					
일반직 계	448	239	7	54	11	18	119
4급	1	1					
4~5급	2	1		1			
5급	27	12	3	1	1	1	9
6급	119	72	1	7	3	6	30
7급	138	75	2	11	4	7	39
8급	107	64		22	1	1	19
9급	54	14	1	12	2	3	22
별정직 계	13	1	0	12	0	0	0
6급 상당	12	1		11			
7급 상당	1			1			
연구직 계	2	2	0	0	0	0	0
학예연구사	1	1					
임업연구사	1	1					
지도직 계	30	0	0	30	0	0	0
지 도 관	3			3			
지 도 사	27			27			
기능직 계	82	45	5	9	3	2	18
기능 6급	2	2					
기능 7급	7	6		1			
기능 8급	13	10	1	1			1
기능 9급	26	15	2	3	2	2	2
기능10급	34	12	2	4	1		15

신·구 조문대비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1조(목적) (생략) 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 : **565명** 2. 의회사무과 : **11명**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 ---------- -------576명---------- -----. 1. ----- : **564명** 2. ----- : **12명**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○ 의회전문위원의 정수 기준 및 직급기준 조정